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예방요원 후보자 중에서 건축허가동의 동의업무, 위험물 제조소 등의 허가업무, 소방검사업무(화재현장검사 제외) 등의 담당요원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8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의 소방검사에 관한 지침 및 지시는 폐지한다.

— 特別點檢 實施 —

점검 부서에서는 4월 5일부터 4월 19일까지 특별 점검을 실시하였다.

이 점검은 재무부 장관의 위험 관리 제도 활용 촉구지시 및 내무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보험금액 50억원 이상의 특수 건물과 10억원 이상의 금융기관 관련 물건(이하 금보물건이라함)의 위험 조사를 능률적으로 시행, 부보물건에 대한 위험 관리 자료를 제공하고 내무부에서 요청한 중요건축물 위탁 검사 대상 물건의 특별 점검을 효과적으로 실시하여 방재적인 효과를 증대시킴으로써 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었다.

이 점검에 소요된 인력 현황은 별표와 같다.

表 1. 특별점검실시시간별 소요인력

구 분	실 시 기 간	실 시 건 수	소 요 인 력
1차	2주(4.5 ~ 4.19)	113	80
2차	2주(6.7 ~ 6.21)	115	80
3차	12일(9.20 ~ 10.1)	60	60
계	42日	288	220

表 2. 부서별 소요인력

구 분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대 전	광 주	전 주	합 계
	점 1	점 2	계							
1차	20	18	38	16	8	8	4	3	3	80
2차	20	22	42	16	8	4	4	3	3	80
3차	17	16	33	12	8	4		3		60
계	57	56	113	44	24	16	8	9	6	220